



경상남도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 됩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2211호 2016. 1. 7.(목)



발행 경상남도

문의 ☎ 055-211-20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 남 공 보

(2) 제2211호

고 시

제2015-623호	대포근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고시 4
제2015-624호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6
제2016-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관보 고시)
제2016-2호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계획 등 (변경)승인 · 고시 21
제2016-3호	어곡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고시 24
제2016-4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30
제2016-5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32

공 고

제2015-1540호	2016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기관 공모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42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33
제2015-1543호	경상남도 공보관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44호	용역 입찰 공고[2016년 경상남도 청사 및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46호	2017년 조립사업용 묘목생산 대행자 모집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4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4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34
제2015-1549호	2016년도『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생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5-1550호	용역 긴급입찰 공고[2016년 경남도청 직원 독서통신교육 위탁 용역](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1호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2호	경쟁입찰(긴급) 공고[경남학숙 시설 현대화사업 전기공사](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경남학숙 시설 현대화사업 통신공사](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경남학숙 시설 현대화사업 소방공사](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6호	2016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35
제2016-7호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주관기관 공모(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경남도립거창대학 해외어학연수 항공권 구매대행 용역](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9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10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 남 공 보

제2211호 (3)

제2016-11호	경상남도도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12호	곤양천 외 5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44
제2016-13호	2016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기관 공모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1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사항 공고	79
제2016-15호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수리 공고	80
제2016-1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81
제2016-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82
제2016-18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83
제2016-19호	조례 제정과 폐쇄 청구권자 총수 공표.....	98
제2016-20호	경상남도 청사관리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99
제2016-21호	소액수의계약 전적제출 안내공고[경남학숙 시설현대화사업 석면철거 및 처리용역](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22호	2015.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23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공고	
제2016-25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장지지구 도로안전 정비사업](도 홈페이지 공고)	
제2016-26호	용역 제한경쟁입찰 안내 공고[2016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민간위탁과정 운영](도 홈페이지 공고)	

알 림

창원시공고제2015-2325호	창원도시계획시설(공원:331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14
창원시고시제2016-1호	창원도시관리계획(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5
진주시고시제2015-131호	지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121
통영시고시제2015-145호	통영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38
통영시고시제2016-1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43
통영시공고제201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45
통영시공고제2016-7호	통영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46
통영시공고제2016-17호	통영도시계획시설(용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52
통영시공고제2016-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53
통영시공고제2016-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54

창원시 고시 제2016 - 1호

창원도시관리계획(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08.03.)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4-248호(2014.9.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8호(2015.11.2)에 따라 최종 결정(변경)된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7.

창 원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후	
가칭	천사1 특별계획구역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번지	107,620.4	-	107,620.4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후		
준공임지역	107,620.4	-	107,620.4	100.0

* 가칭 :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고시 제2011-218호, 2011. 9.25)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기준	기준	중점	사용 형태	주요 통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번호								
신설	종로	2	105	15	국지도로	296	데로9-13(데로2)-2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559	8	국지도로	128	중로2-105(데로2)-43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중로2-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폭원 : 15m - 연장 : 29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천사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소로2-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폭원 : 8m - 연장 : 12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천사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116) 제2211호

5. 건축물의 용도·건축물용적률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집회장, 단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지역에서 치할 수 있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적(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단상 전시장 -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락(소매점) 및 나락(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락(공연장), 라목(서점), 아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목(일반음식점), 하목(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업무시설(단,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 ■ 업무용적(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류용적(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적(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용적(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및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공공업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적(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시설(단, BL3-1~2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법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판란 시설

4. 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지구번호	면적(㎡)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변경	
전시 1	BL1	107,620.4	60,378	기정	변경	107,620.4
				BL1-1	3,306	
				BL1-2	4,464	
				BL1-3	7,769	
				BL1-4	6,401	
				BL1-5	3,595	
				BL1-6	7,759	
				BL1-7	8,383	
				BL1-8	18,701	
				BL2-1	3,405	
				BL3-1	4,285	
				BL3-2	4,285	
				BL3-3	38,217	
				BL3-4	9,823	
				BL3-5	9,824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친린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친린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20m 이상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친린광장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 6m 이상 • 폭로 3m(보도의 동일하게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 건물진입통로 	

2) 공개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의 결절부 및 외부에서 배후부지의로 판문을 형성하는 곳에 지정 • 공개공지를 필로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공공보행통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속 향성을 위하여 블록 내부로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지정 •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가능선 부분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 •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장식장장을 유도 	

다. 대지내 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안블루용지5에 점한 획지선에 지정된 건축한계선(B=10m)으로 발생한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소음 및 공해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도록 계획. 다만, 차장 및 이용자의 대지내 진출입구간은 제외 	

2. 관계도면 : 개재 생략(원시형 도시계획과 비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 계속 >

구분	기정(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용도	비고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사무실, 연구소)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장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준공예정인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속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이의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단, BL3-1-2에 광고시설만 설치시는 70% 이하) • 블루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이하 (단, BL3-1-2에 광고시설만 설치시는 350% 이하) • 블루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m 이하 • 업무용지(BL3-1-2), 블루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m 이하 • 업무용지(BL3-1-2), 블루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m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2-23호선에 점한 획지선은 건축한계선 20m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 함안블루용지에 점한 획지선은 건축한계선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2-23호선에 점한 획지선은 건축한계선 20m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 함안블루용지에 점한 획지선은 건축한계선 10m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차양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양진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별로 차양진출입허용구간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로의 차양진출입구는 차양진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친린공지면 차양진출입구 중 데크면은 폭 8m 이하, 블루시설용지 면적 12m 이상 확보 	

[별첨] 건축부분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신항만 복원태이더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시1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부분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배치·용도·형태 및 공지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신항만 복원태이더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시1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계획적 필요에 의한 사항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된 예시 또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④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 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 ⑤ 대저상포장 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피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⑦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 개발의 관

리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지역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 3. "허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5. "최고높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 상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 의한다.
- 6.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 7. "고층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그 선을 넘어서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8. "차량출입허용공간"이라 함은 대지내로의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 9.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및 추진축물로의 보행출입구를 당해 방향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10.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 11. "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정제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 중 일반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12. "공중보행통도"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 13.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개발함을 말한다.

제 2 장 규제사항

제 5 조 (단위대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 1. 필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대지
- 2. 합병가능 표시에 해당되는 일단의 대지

제 6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는 분할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이 표시된 획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③ 도면표시



공동개발

제 7 조 (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제 8 조 (건폐율)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복원태이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건폐율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70%	건폐율 70%이하
-----	-----------

제 9 조 (용적률)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복원태이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용적률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400%	용적률 400%이하
------	------------

제 10 조 (최고높이)

-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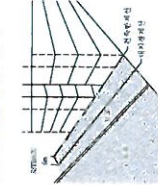
70m	최고높이 70m이하
-----	------------

제 11 조 (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양출입을 위한 통째시 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

- ③ 건축한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④ 도면표시

■ 건축한계선 예시



■ 건축한계선

제 12 조 (전면공지)

-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한다.

- 1.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정 - 식수대 1.5m 이상 조정 - 기타 건물진입용도로 조정
- 2. 제2호 건축선(20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전면광장으로 조정

- ② 전면공지에는 식수대와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진출입구간은 협프형 평단보도 및 사고서 포장패턴 등 보행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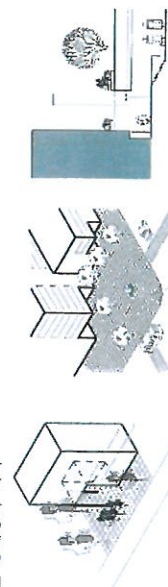
■ 전면공지 예시

제 13 조 (공개공지)

- ①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개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②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 ③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다.

■ 공개공지 예시



■ 오픈형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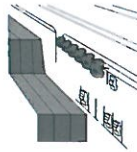
■ 반지공인 형태의 공개공지

■ 원상형 공개공지

제 14 조 (대지내 조정)

- ① 차폐식재
1. 공용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면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도로면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밑식 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② 결정도상에 대지내 조경이 표시된 곳에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양 및 이용자가 대지내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 및 이를 관리하는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 차폐식재 예시



제 15 조 (공공보행통로)

- ①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하는 통로로서, 2시간 개방되도록 하여야 하며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폭은 4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폭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의 개발감 확보를 위하여 폭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다.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라. 보행안전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마.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기구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장식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조성되는 부분은 차방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양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블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공보행통로 중 장식포장 등으로 조성된 면적에 한하여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 ② 부시벽 및 부시형 서터 :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 이상을 부시벽 및 부시형 서터로 하여야 한다.
- ③ 건축설비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 17 조 (대지내로의 차방진출입)

- ① 대지내로의 차방진출입구는 차방진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할 허용한다.
- ② 전면공지면 차방진출입구 중 도로면은 폭 8m 이하, 플류시설용지는 폭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③ 도면표시



차방진출입허용구간

제 18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지층부(5층 이하)의 색채변화를 체도 및 평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2. 체도 및 평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9 조 (담장 및 울타리)

- ①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권 장 사 항

제 20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 디자인을 권장한다.
- ② 기단부(출입된 형태의 지층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③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 21 조 (주차공간 확보)

- ① 피지별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업무용지는 120% 이상, 전시·플류시설 용지는 150%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